

『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4월 22일

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회 식

나. 제안이유

-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의 상위법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개정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
- 박물관자료 수집(구입, 기증, 기탁, 대여 등) 및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물관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‘유물’을 ‘자료’로 변경(제명, 안 제1조~제8조, 제11조~제14조)
-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서 삭제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○ 본 『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상위법인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한정된 범위를 나타내는 ‘유물’ 대신 광의의 ‘박물관자료’로 용어를 정비하고,
- 박물관 개관 이후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자료수집심의위원회를 대신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개관 후 자료수집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본 조례는 구미시에서 건립 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관리방안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